



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엽니다

2021년도

장학생 및 특기생 선발지침

(재) 경기도민회장학회

- 차 례 -

□ 장학회 설립 목적 및 장학금 지급 관련 규정	1
□ 장학금 지급 대상 및 선발예정인원, 장학금 지급기간	1
□ 장학생 및 특기생 신청 공통 자격요건	1
□ 장학생 신청 및 선발 평가기준	2
□ 예·체능 특기생 신청 및 선발 평가기준	3
□ 장학생 및 특기생 선발 신청서 접수	4
□ 장학금 지급 중지 및 반납, 선발 홍보협조	5
□ 유의 및 당부사항	6
<표 1> 2021년도 장학생 배정기준표	7
<표 2> 2021년도 장학생 및 특기생 선발일정	8
<표 3> 2021년도 장학생 및 특기생 선발인원 배정표	9
<표 4> 장학생 선발 신청서	10
<표 4-1> 장학생 신청서 구비서류	11
<표 5> 예·체능 특기생 선발 신청서	13
<표 5-1> 예·체능 특기생 신청서 구비서류	14
□ 장학생 선발 평가 기준 및 방법	15

2021년도 장학생 및 특기생 선발지침

□ (재)경기도민회장학회 설립목적

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, 학비지원이 필요한 학생이나, 예능·운동 경기등에 재능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장학금과 연구비를 지급하고, 장학 시설을 운영하여 유능한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

□ 장학금 지급 관련 규정

- 경기도민회장학회 운영지원 조례
- (재)경기도민회장학회 정관 제4조 제1항 제1호
- (재)경기도민회장학회 장학금 및 연구비 지급 시행세칙

□ 장학금 지급대상 및 선발예정 인원

(단위 : 명)

구 분	계	장 학 생 (성적, 소득)			특 기 생	
		소 계	대학생	전문대생	체 육	예 능
선발인원	460	410	320	90	26	24
지급한도액	-	-	4백만원	3백만원	1백만원	1백만원

※ 단, 선발 장학생중 학기별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경우, 장학생 추천 후보자 중에서 추가 선발 할 수 있으므로 선발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

□ 장학금 지급재원 : 경기도 장학사업지원보조금 및 재단 장학기금 운용이자 수입

□ 장학금 지급기간 : 1년(휴학, 퇴학, 타장학금 등록금초과자 제외)

※ 2학기에는 별도 선발하지 않으며, 장학금은 학기별로 50%씩 지급

□ 장학생 및 특기생 신청 공통 자격 요건

- 2018년 2월 27일부터 접수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부 또는 모(기혼자는 본인)가 3년이상 연속하여 경기도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민의 자녀(※ 형제·자매인 경우도 신청 가능)로서,
- 국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 이거나, 신입(편입) 또는 복학 예정인 학생

□ 장학생(성적, 소득) 신청 및 선발 평가 기준

○ 성적 및 소득 수준 기준

성 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학 재학생 :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, 평점평균 B학점(B0) 이상 • 대학 신입생 : 수능성적표상의 과목별 백분위 표시가 평균 80이상이거나 (상위 100분의 20 이내로 제2외국어는 제외), 고교 3-2학기 내신 성적 전과목 평균 80점이상 ※검정고시 출신은 검정고시 성적표 기준 ※ 고교생 : 2021년 기준 고교생은 무상교육 지원으로 선발제외 ※ 예·체능 특기생은 학업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수상실적만 반영 (예·체능 특기생은 고교생도 신청가능)
소 득 수 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2020년도 부모 연간 건강보험료 고지 합산금액이 400만원이하 - 부모가 피부양자인 경우(자녀, 친척등) 가입자 기준

※ 총 평가점수 동점시 우선순위 : ① 성적 ② 소득수준 ③ 고학년

■ 신청 및 선발 제외 학생(다음 사유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)

1. 위 성적기준이나 소득수준에 적합하지 않은 학생
2. 원격 대학(방통대, 사이버대등)과 학점 은행제 대학 재학생, 교환 학생(평가 대상 학기 및 신청일 현재) 또는 직업전문학교 재학생
 ※ 단, 직업전문학교중 교육부 장관의 학습과목 평가 인정학교 예외
3. 1, 2학기 등록금 전액을 국가, 자치단체나 그 출연기관, 학교 등으로부터 지원 받는 대학생(성적 장학금 포함)
4. 2021년도에 복수 전공이나 전공 심화 과정 등으로 학사 학위과정 정규학기 (2년제 : 4학기, 4년제 : 8학기등)를 초과하거나, 2학기 복학 예정 학생
5. 당 재단에서 운영하는 경기푸른미래관에 재사중이거나 입사 예정인 학생
 ※ 단, 경기푸른미래관에 대한 장학금 지정 기탁에 따른 선발은 예외
 (경기푸른미래관 문의 ☎02)998-1003)

※ 2021년 기준 고교생은 무상교육 지원으로 선발제외

○ 장학생(성적, 소득) 선발 평가 기준

계(%)	성 적	소득수준	자원봉사	다자녀(3이상)
100	20	70	5	5

※ 장애인 가정 가점 : 5점 (장애정도 차등 배점-심한장애(1~3급) 5점, 심하지않은장애(4~6급) 3점)

□ 예·체능 특기생 신청 및 선발 평가 기준

○ 예·체능 특기생 신청 기준(고교생도 신청가능)

(체육특기생) 2020년도 전국 및 광역 시·도 단위 이상 대회 수상 학생

(예능특기생) 2020년도 전국 및 광역 시·도 단위 이상 대회 수상 학생

☞ 예능 범위 : 사진, 국악, 음악, 무용, 미술, 문학, 연예, 연극, 건축, 영화

○ 예·체능 특기생 선발 평가 기준

예 능		체 육	
구분	순위 및 대회명	구분	순위 및 대회명
○ 대회주최	① 전국대회 ② 시·도대회	○대회주최	① 전국체전 ② 전국대회 ③ 시·도대회
○ 대회규모 (훈격)	① 장관·지사 ② 도교육감 ③ 도단위협회장 ④ 대학총장	○대회규모 (훈격) -전국시·도대회	① 대통령기 ② 국무총리기 ③ 문화·체육부장관기 ④ 대한체육회장기 ⑤ 중앙종목단체장기 ⑥ 교육감기
○ 시상대상	① 대상(장원) ② 금상·은상(최우수,우수상) ③ 동상(특선) ④ 장려·입선·가작	○시상대상	① 우승 ② 준우승 ③ 3위
○ 참가방식	① 개인참가 ② 단체참가	○참가방식	① 개인전 ② 단체전
○ 기 타	-전년도 수혜자 추천배제 -전년도 수상실적 필수 -동점일 경우 상장개수	○기 타	-전년도 수상실적 필수

□ 장학생 및 특기생 선발 절차

단 계 별	장 학 생	특 기 생
인원 배정	- 시·군별 선발인원 배정	- 예능·체육별 선발인원 배정
접수 및 평가	- 시·군별 신청서 접수 및 평가기준에 의한 1차 평가	- 신청서 접수 및 평가기준에 의한 1차 평가
후보자 추천	- 배정인원의 3배수	- 배정인원의 2배수 추천
선발 심사	- 후보자 순위 평가결과 확인 및 선발심사위원회 심사	- 후보자 순위 평가결과 확인 및 선발심사위원회 심사
심사 의결	- 재단 이사회 의결, 확정	- 재단 이사회 의결, 확정

□ 장학생 및 특기생 선발 신청서 접수

- 접수기간 : 2021. 2. 8(월) ~ 2. 26(금)
- 장학생 및 특기생 선발 신청서와 구비서류<표 4, 표 5>
 - ☞ 신청 접수한 서류는 장학생 선발 후에도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접 수 처
 - (장학생) : 경기도민회장학회 사무실(직접 방문 제출 또는 등기우편만 접수)
→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3, 1102호(리더스빌딩) 우편번호 06651
 - (특기생) : 직접 방문 제출 또는 등기우편만 접수
 - 예능 : 예총경기도연합회 (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, 경기문화재단 6층 : ☎ 031-239-6457)
 - 체육 : 경기도체육회 (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134, 6층 경기운영부 : ☎ 031-250-0452)
- ※ 2학기 장학금 지급에 따른 관련서류 제출
 - 제출기간 : 2021. 8월중
 - 제출서류
 - 장학생중 대학생과 전문대생 : 2학기 등록금 납부 확인서
 - 장학생중 예·체능 특기생 : 재학증명서

□ 장학금 지급 중지 및 반납

- 학기중 휴학, 조기졸업, 퇴학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
-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에 따라 정부, 지자체, 민간에서 지원하는 학기별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, 한국장학재단이나 학교 또는 당 장학재단과 사전 협의 후 반납 절차 이행

【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 안내】

① 관련근거

- 한국장학재단 설립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5 (중복지원의 방지)
- 취업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제39조 (중복지원의 방지)

② 유의사항

- 학자금 대출자는 한국장학재단등 학자금 실행기관의 지원기준에 따라 학자금 대출금이 중복 수혜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 (학자금 대출자가 경기도민회장학회 장학금 수혜이후 중복지원 대상으로 확인시, 등록금을 초과한 금액만큼 장학금을 학자금 대출금으로 상환하면 대출금 원금과 이자부담 감소)

□ 장학생 및 특기생 선발 홍보 협조

- 행정기관 : 도 및 시·군 홈페이지 배너창, 도정 및 시·군정 홍보지, 읍·면·동 반상회보

※ 경기도민회장학회 장학금 사업은 경기도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음

- 도시·군민회 : 경기도민회 홈페이지, 각 시·군민회 홈페이지

- 기 타 : 해당기관, 유관단체 홈페이지, 지역신문 및 지역 유선방송사

□ 유의 및 당부사항

- 선발신청서 기재사항 누락 여부 확인 (보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)
- 주민등록등본상에 신청학생 본인의 주민번호는 반드시 다 표기된 걸로 제출
(학자금이중지원방지 프로그램 등록시 학생 주민번호 반드시 필요)
- 연속 거주기간 3년이상 (2018. 2. 27 ~ 현재)은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경기도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확인(단, 부모 유고시 현 세대주)
- 신청 접수기간 준수(우편으로 접수할 경우 등기접수일이 2.26(금)에 한함)
- 구비서류는 반드시 소정양식에 의하고, 가급적 원본을 접수하되 부득이 사본 접수 시에는 원본대조하여 제출
- 신청서 양식은 경기도민회 홈페이지(www.ggdm.kr)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단법인 경기도민회장학회 사무처로 문의바람
☎ 02)2055-2320, 02)2055-2322 FAX : 02)2055-2321

〈표 1〉

【 2021년도 장학생(성적, 소득) 배정기준표 】

구 분	계	대학생	전문대생
합 계	410	320	90
○ 기본 배 정	161	99 (3명×31시군+2명× 미수복3)	62명 (2명×31시군)
○ 추 가 배 정	4	4	-
출연자 희망지역(안산,시흥)	4	4 (2명×2시)	-
○ 별 도 배 정	2	2	-
경기푸른미래관 지정기탁	2	2	-
○ 인 구 비 례	243	215	28
인 구 수	243	215	28

※ 경기도 인구수 (2020. 10월말 현재) : 13,400,615명

〈표 2〉 2021년도 장학생 및 특기생 선발 일정

내 용	일 정	비 고
◦ 장학생 선발 일정등 홍보	1. 18 ~ 2. 26	경기도민회장학회 및 시·군민회, 시군청
◦ 장학생선발신청서 접수	2. 8 ~ 2. 26	경기도민회장학회
◦ 장학생선발 심의	3. 24	선발심사위원회
◦ 장학생선발 확정	3. 31	재단이사회
◦ 장학생명단 통지	4. 1 ~ 4. 5	경기도민회홈페이지
◦ 장학증서 교부	4. 19 ~ 4. 23	경기도민회장학회
◦ 장학금 송금	4. 26 ~ 4. 30	경기도민회장학회

※ 상기일정은 장학회 운영 관계상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.

〈표 3〉

2021년도 장학생 및 특기생 선발인원 배정표

시군 및 기관별	계	장 학생			특 기 생	
		소계	대 학 생	전문대생	체 육	예 능
계	460	410	320	90	26	24
수 원 시	27	27	22	5	-	-
고 양 시	24	24	20	4	-	-
용 인 시	24	24	20	4	-	-
성 남 시	22	22	18	4	-	-
부 천 시	20	20	16	4	-	-
안 산 시	18	18	15	3	-	-
화 성 시	21	21	17	4	-	-
남 양 주 시	18	18	14	4	-	-
안 양 시	15	15	12	3	-	-
평 택 시	15	15	12	3	-	-
의 정 부 시	13	13	10	3	-	-
파 주 시	13	13	10	3	-	-
시 흥 시	16	16	13	3	-	-
김 포 시	13	13	10	3	-	-
광 명 시	11	11	8	3	-	-
광 주 시	12	12	9	3	-	-
군 포 시	10	10	7	3	-	-
이 천 시	9	9	7	2	-	-
오 산 시	10	10	7	3	-	-
하 남 시	11	11	8	3	-	-
양 주 시	10	10	7	3	-	-
구 리 시	8	8	6	2	-	-
안 성 시	8	8	6	2	-	-
포 천 시	7	7	5	2	-	-
의 왕 시	8	8	6	2	-	-
여 주 시	7	7	5	2	-	-
양 평 군	7	7	5	2	-	-
동 두 천 시	7	7	5	2	-	-
과 천 시	6	6	4	2	-	-
가 평 군	6	6	4	2	-	-
연 천 군	6	6	4	2	-	-
개 성 시	2	2	2	-	-	-
개 풍 군	2	2	2	-	-	-
장 단 군	2	2	2	-	-	-
경기푸른미래관	2	2	2	-	-	-
경기도체육회	26	-	-	-	26	-
예총경기도연합회	24	-	-	-	-	24

〈표4 - 1〉 장학생 신청서 구비서류

구 비 서 류 명	비 고						
<p>① 장학생 선발 신청서</p> <p>※ 본인 신청 의사 및 개인정보 동의 제공 여부 확인</p>							
<p>② 주민등록표 등본(학생 본인의 주민번호는 모두 표시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부모와 신청 학생이 한세대 등재된 경우 : 세대별 주민등록표 • 부모와 신청 학생이 세대분리 등재된 경우 : 세대별 주민등록표 및 가족관계 증명서 <p>※ 주민등록표 발급 신청시 경기도내 연속 거주 3년 이상(부모기준)이 확인될 수 있도록 주소변동사항을 3년 전부터 소급하여 발급신청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5%;">번호</th> <th style="width: 35%;">주 소</th> <th style="width: 50%;">발생일 / 신고일 변 동 사 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경기도 ○○○○○○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18-2-27 ○○-○○-○○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(최소 2018. 2. 27이후부터 현재까지 주소변동사항이 등재되어야함)</p>	번호	주 소	발생일 / 신고일 변 동 사 유		경기도 ○○○○○○	2018-2-27 ○○-○○-○○	부모기준
번호	주 소	발생일 / 신고일 변 동 사 유					
	경기도 ○○○○○○	2018-2-27 ○○-○○-○○					
<p>③ 2021년 1학기 교육비납입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</p> <p>- 국내 학교 재학 여부 및 타 장학금 수혜금액 확인</p> <p>※ 등록금 납부 전이면 납부 고지서 제출가능(추후 영수증 제출)</p>							
<p>④ 2020년도 2학기 성적 증명서(증명서 하단에 위변조 확인 가능 표시된 원본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학생 및 전문대생 : 2020년도 2학기 성적 증명서 상에 평점평균 B학점 이상(복학생은 직전학기, 신입생은 수능성적표 또는 고교 3-2학기 성적표, 검정고시 출신은 검정고시 성적표) - 4.5점 만점기준으로 3.0이상(4.3점 만점기준(2.86), 4.0점 만점기준(2.66)) 							

구 비 서 류 명	비 고
<p>⑤ 2020년도(1~12월) 부·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: 부·모 각각 1부(총 4부)</p> <p>가.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상에 2020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내용이 모두 확인되어야 하며,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2020년 이전 까지 적용하여 제출</p> <p>※ 발급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(홈페이지, 팩스, 방문발급), 정부24</p> <p>나. 부모 이혼시 : 혼인관계 증명서 추가(상세)</p> <p>다. 부모 사망시 :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(상세)</p> <p>라. 수급자인 경우 : 수급자 증명서 제출(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자)</p> <p>※ 부모 해외파견시 - 파견 최근년도분 제출 부모 행복시 - 행복 사실 증명서 제출</p>	<p>부모기준</p>
<p>⑥ 2020년도 자원봉사활동 실적 확인서 (연40시간이상)</p> <p>→ 다음 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에 한해 봉사활동 실적 인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원봉사 센타장 (중앙, 시·도, 시·군) ○ 청소년 활동 진흥센타장 (중앙, 시·도, 시·군) ○ 사회복지협의회장 (중앙, 시·도, 시·군) <p>※ 자원봉사(1365), 청소년(dovol), 사회복지(vms) 포털 활용 발급</p>	<p>학생기준</p>
<p>⑦ 가족관계증명서</p> <p>- 3인 이상 다자녀 가구 해당하는 경우</p>	<p>가족기준</p>
<p>⑧ 장애인 증명서</p> <p>- 부모 또는 학생 본인이 해당하는 경우</p>	<p>부모 또는 학생기준</p>

<표5 - 1> 예·체능 특기생 신청서 구비서류

구 비 서 류 명	비 고						
<p>① 장학생 선발 신청서</p> <p>※ 본인 신청 의사 및 개인정보 동의 제공 여부 확인</p>							
<p>② 주민등록표 등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부모와 신청 학생이 한세대 등재된 경우 : 세대별 주민등록표 • 부모와 신청 학생이 세대분리 등재된 경우 : 세대별 주민등록표 및 가족관계 증명서 <p>※ 주민등록표 발급 신청시 경기도내 연속 거주 3년 이상(부모기준)이 확인될 수 있도록 주소변동사항을 3년 전부터 소급하여 발급신청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93 1211 1233 1379"> <thead> <tr> <th>번호</th> <th>주 소</th> <th>발생일 / 신고일 변 동 사 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</td> <td>경기도 ○○○○○○</td> <td>2018-2-27 00-00-0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(최소 2018. 2. 27이후부터 현재까지 주소변동사항이 등재되어야함)</p>	번호	주 소	발생일 / 신고일 변 동 사 유		경기도 ○○○○○○	2018-2-27 00-00-00	부모기준
번호	주 소	발생일 / 신고일 변 동 사 유					
	경기도 ○○○○○○	2018-2-27 00-00-00					
<p>③ 예능·체육대회 입상 상장 사본</p> <p>(예능) 2020년도 전국 및 광역 시·도단위 이상 대회에서 수상한 실적</p> <p>(체육) 2020년도 전국 및 광역 시·도단위 이상 대회에서 수상한 실적</p>							
<p>④ 재학증명서</p> <p>- 신입생은 등록금 납부 영수증등 입증 서류</p>							

2021년도 장학생 선발 평가기준 및 방법

□ 장학생 (운영규정 제5조)

◎ 평가대상 및 반영비율

합 계	성 적	소 득	자원봉사	다자녀(3이상)
100%	20%	70%	5%	5%

※ 장애인(본인, 부모) 가점 : 장애정도별 점수를 총 평가점수에 가산

장애정도	심한장애(1~3급)	심하지않은장애(4~6급)
점 수	5	3

◎ 학업성적 평가방법 (운영규정 제6조)

○ 대학생·전문대생 : 총장이 발행하는 2020년도 2학기(복학생은 직전학기)

성적증명서상의 평점평균을 백분율로 환산한 후 평가비율을 적용하여

평가(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계산)

→ 평점평균 ÷ (4.5 or 4.3 or 4.0) × 0.2 (20%) × 100 = 평가점수

○ 대학 신입생 : 수능성적의 과목별 백분위(단, 제2외국어는 제외) 점수나

고교 3-2학기 내신성적 과목별 원점수의 전체 평균점수 × 0.2(20%) = 평가점수

◎ 소득수준 평가방법 (운영규정 제7조)

- 평가대상 : 2020년도(1~12월) 부모의 건강보험료 합산 고지금액 (합산고지금액이 400만원 이상인 경우 평가대상 제외)

※ 부모가 각각 지역 건강보험이나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전부 합산하며, 친지나 자녀의 세대원이거나 직장 피부양자인 경우는 합산하지않음

- 평가방법 : 부모의 건강보험료 합산 고지금액별 해당 배점 적용

※ 합산 고지금액별 배점기준표 참조

◎ 자원봉사활동실적 평가방법 (운영규정 제8조)

- 평가대상 : 2020년도(1월~12월)에 행한 자원봉사활동 실적
- 자원봉사활동 실적확인서 인정범위 (중앙, 시·도, 시·군)
 - ① 자원봉사 센터장이 발급한 자원봉사활동 확인서
 - ② 청소년활동 진흥센터장이 발급한 봉사활동 확인서
 - ③ 사회복지 협의회장이 발급한 사회복지 봉사활동 실적인증서
- 평가방법 : 자원봉사활동실적별 배점 적용

항 목	연80시간이상	70~79시간이하	60~69시간이하	50~59시간이하	40~49시간이하
배 점	5	4	3	2	1

◎ 다자녀 가구 평가방법

- 평가대상 : 3인이상 다자녀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
- 평가방법 : 3인 이상 다자녀 가구 배점 적용

자녀수	3인	4인	5인이상
점 수	3	4	5

◆ 건강보험료 연간 고지금액별 배점 기준표

연간 고지 합산금액	배점	연간 고지 합산금액	배점
0 (수급자)	70.0	2,000,000원이상~2,100,000원미만	49.0
100,000원미만	69.0	2,100,000원이상~2,200,000원미만	48.0
100,000원이상~200,000원미만	68.0	2,200,000원이상~2,300,000원미만	47.0
200,000원이상~300,000원미만	67.0	2,300,000원이상~2,400,000원미만	46.0
300,000원이상~400,000원미만	66.0	2,400,000원이상~2,500,000원미만	45.0
400,000원이상~500,000원미만	65.0	2,500,000원이상~2,600,000원미만	44.0
500,000원이상~600,000원미만	64.0	2,600,000원이상~2,700,000원미만	43.0
600,000원이상~700,000원미만	63.0	2,700,000원이상~2,800,000원미만	42.0
700,000원이상~800,000원미만	62.0	2,800,000원이상~2,900,000원미만	41.0
800,000원이상~900,000원미만	61.0	2,900,000원이상~3,000,000원미만	40.0
900,000원이상~1,000,000원미만	60.0	3,000,000원이상~3,100,000원미만	39.0
1,000,000원이상~1,100,000원미만	59.0	3,100,000원이상~3,200,000원미만	38.0
1,100,000원이상~1,200,000원미만	58.0	3,200,000원이상~3,300,000원미만	37.0
1,200,000원이상~1,300,000원미만	57.0	3,300,000원이상~3,400,000원미만	36.0
1,300,000원이상~1,400,000원미만	56.0	3,400,000원이상~3,500,000원미만	35.0
1,400,000원이상~1,500,000원미만	55.0	3,500,000원이상~3,600,000원미만	34.0
1,500,000원이상~1,600,000원미만	54.0	3,600,000원이상~3,700,000원미만	33.0
1,600,000원이상~1,700,000원미만	53.0	3,700,000원이상~3,800,000원미만	32.0
1,700,000원이상~1,800,000원미만	52.0	3,800,000원이상~3,900,000원미만	31.0
1,800,000원이상~1,900,000원미만	51.0	3,900,000원이상~4,000,000원미만	30.0
1,900,000원이상~2,000,000원미만	50.0	4,000,000원이상	제외